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로당 지원 확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추가 등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0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1호)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4호)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5호)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호)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2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6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검토의견	9
1.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의원안)	9
2.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추가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한준호의원안)	19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0.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큼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도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
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25인
- (2) 제 안 일 : 2024. 6. 12.
- (3) 회 부 일 : 2024.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3.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민석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12.
- (3) 회 부 일 : 2024.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추세를 볼 때,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4.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30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13.
- (3) 회 부 일 : 2024. 6.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6.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14.
- (3) 회 부 일 : 2024.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7.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6. 17.
- (3) 회 부 일 : 2024. 6.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의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 확대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의원안)

□ 6건의 개정안은 각각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형배·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 의원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에 필요한 비용(부식구입비·인건비·취사용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영석의원안은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국가·지자체의 의무로 강화함.

이종배의원안에서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자체절감 비용의 경우 국고 반납 없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남희의원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의 급식지원¹⁾²⁾을 추가하고, 양곡구입비 등 지원대상을 경로당 뿐만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확대함(안 제37조의2 등).

현행	민형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김민석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이종배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양곡

- 1) 김남희의원안(2200546)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급식지원,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급식지원,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급식지원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에만 식당을 두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6대 사업 기초 가이드」(보건복지부)는 급식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u>(「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u>구입비 등 식자재구입비 및 부식구입비와 인건비</u>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u>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보조할 수 있다.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副食)구입비 2. 냉난방비용 3. 취사용 연료비	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보조하여야 한다.</u>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u>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u><신 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u>경로당(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 각 호의</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 조금이 결 산에 따라 확정된 보 조금을 초 과하는 경 우 해당 경 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이 확정된 회 계연도에 한하여 제1 항 각 호의 비용 중 다 른 비용에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 포한 날부 터 시행한 다.	<부칙> 이 법은 공 포한 날부 터 시행한 다.	<부칙> 이 법은 공 포 후 3개 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 포한 날부 터 시행한 다.	<부칙> 이 법은 20 25년 1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 포한 날부 터 시행한 다.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
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
2호)로 2022년말 기준, 전국 총 68,223개가 있음. 친목도모, 취미여
가프로그램이용 외에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
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독거노인 비율과 경로당 이용 이유 >

(복수응답 가능 / 단위: %)

연도	독거노인 비율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19.0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19.8	82.9	62.5	19.0	11.0	2.3	1.6	1.3	0.2

* 자료: 「장래인구추계」, 「노인 실태조사」

* 독거노인 비율은 60대 이상 인구 중 비율임

- 이처럼 경로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예산은 800억원 수준임.

< 2024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194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41.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8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자료: 보건복지부

- 경로당 이용 이유에서 식사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원부족으로 2020년 기준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66,843개소 중 28,041개소(42.0%)이고, 급식인력이 지원되는 곳은 15,037개소(22.5%)에 불과함.

< 경로당 식사제공 및 지원인력 유무(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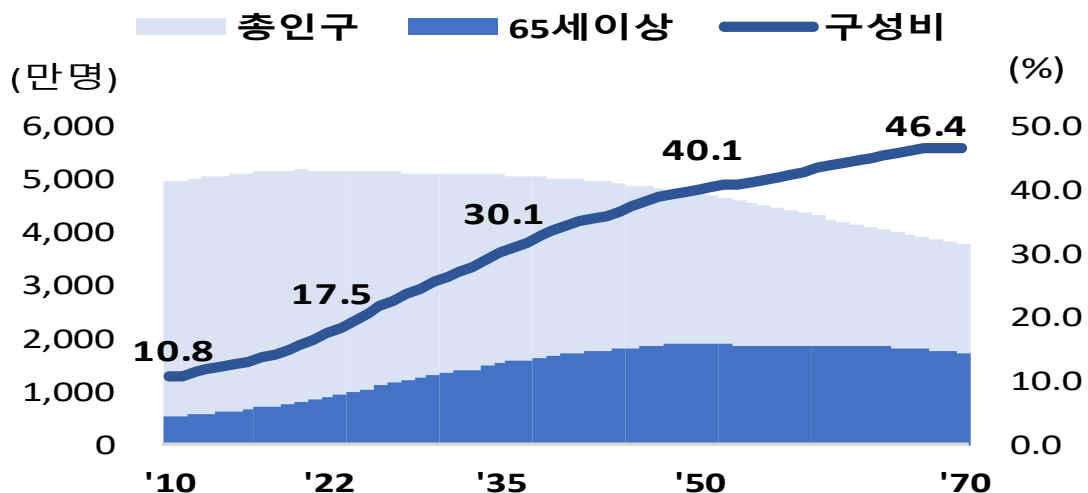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0.8.29~2020.9.29. / 단위: 개소, %)

경로당	식사제공		
		주5회 이상	급식인력 지원
66,843	28,041 (42.0%)	7,745 (11.6%)	15,037 (22.5%)

* 자료: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대산학협력단, 2020.

- 아울러,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구입비 간에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절감한 경우 그 절감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
- 개정안과 같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절감비용을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 및 노인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자체절감 비용의 경로당 운영비 국고 반납 없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3)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있어야 하겠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로당 식자재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과 노인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여 관련부처와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05년~)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법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함. ◦ 또한, 타 지방이양사업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이용 어르신들의 시설 내 기본생활과 관련된 예산으로 혹한기 및 혹서기에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운영비로 사용 허용 시 과도한 냉난방비 등 절감으로 부작용이 우려됨. ◦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으로 통합사용 가능하며, 잔여 예산은 냉난방 관련 기기 수선 등 경상경비에 활용할 수 있음.
기획 재정부	◦ 경로당 운영은 '05년 자원(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과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다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 취지 등에 역행함. - 경로당은 입지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운영방식·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전 노인의 건강에 직결된 필수적인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19년부터 지원함. ◦ 예산 집행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집행잔액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보조금법 등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이양사업에 국가의 보조를 허용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음.
행정 안전부	◦ 국가시책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 이미 국고보조하고 있는 양곡비와 달리 국비를 미지원하고 있는 부식비에 대해서도 최소 양곡비 수준(보조율 50%, 서울20%) 이상의 국고보조가 필요함. ※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제81호 삭제가 필요함.

서울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경로당 운영비 항목 중 일부이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효율적이며, 현장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민원 등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광주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금 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경우 어르신들이 운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냉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구분 없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일원화로 통합을 건의함.
대전시	◦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하던 냉방비·난방비·양곡비 이외에도 가스비·식재료비·식사도우미 인건비 등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 비용 지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 경로당 운영비 사용범위에 냉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구분 없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 경로당 외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에 양곡구입비,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연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소요액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수혜자 이중등록 선별(경로당회원·인복지관회원·노인교실회원 중복가입)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인건비를 포함하면 경로당 대표자가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됨으로, 근로자관련 각종 보험 신고 등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 인건비 지원 대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부산시수영구	◦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통합사용 시 냉난방비를 과도하게 절약하여 냉난방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기존법의 유지가 필요함. - 잔여 예산을 예외적으로 임의 전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세출예산과목 구분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남. -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 검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경로당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대한노인회	◦ 노인권의 신장 및 복지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2.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추가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한준호의원안)

-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여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 아. (생략)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1조의2(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u><신 설></u> <u>차.·카. (생 략)</u> <u>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u> <u>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u> <u>벌되는 죄</u> <u><신 설></u>	<u>차.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u> <u>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u> <u>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u> <u>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u> <u>임수증재)의 죄⁴⁾</u> <u>카.·타. (현행 차목 및 카목과</u> <u>같음)</u> <u>파. -----카목까지의-----</u> <u>-----</u> <u>-----</u> <u>제39조의22(노인학대 관련 지역사회</u> <u>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u> <u>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의심사</u> <u>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u> <u>하기 위하여 제39조의5제2항에</u> <u>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u> <u>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u> <u>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이</u> <u>하 이 조에서 “통합지원체계”라</u> <u>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참여 기관의 종류, 역할 등 통</u> <u>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그 밖의</u> <u>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u> <u>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 4)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제1조의2), 노인학대 관련범죄자에 대해서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제39조의17)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배임 등은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로, 「202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은 경제적 학대(착취)를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함.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제)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 「노인복지법」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제적 학대 정의 및 판정지표 >

(단위: 건, %)

정 의	판정지표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자료: 「202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2022년 노인학대 10,542건 중 경제적 학대는 397건이지만, 학대자에 대한 의존·신뢰관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⁶⁾.

< 유형별 노인학대건수(2018~2022) >

(단위: 건,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18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2019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2020	3,917	4,188	231	431	760	223	53	9,803
2021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2022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 자료: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⁷⁾, 보건복지부 업무수행지침상의 경제적 학대 유형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노인학대

6) 이현주, 노인은 왜 경제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가, KCGAT 2021.3월 <오피니언 제7호>

7)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례를 따르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중재)의 죄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조기에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노인에게는 사후 구제를 위한 지원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경제적 학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금융기관의 금융착취 적발·감시 노력,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 마련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배제할 필요성은 적어 보임.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1. 사업목적·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

2. 사업추진현황: 2024년 예산 123억 4,700만원⁸⁾

- 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중앙1, 지역3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 운영 중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기관명	지원 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보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277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11,077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8)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안번호 2200482, 2024. 7. 3.) 비용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경제적 노인 학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62억 7,700만원(**연평균 52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 그 외, ‘참여 기관의 종류’ 등과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여 기관의 종류’를 ‘참여 기관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 관련 노인학대관련 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 학대 피해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9